

##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[ 2003. 12. 15 ] 조례 제56호

개정 2007. 11. 23 조례 제264호  
일부개정 2013. 12. 26 조례 제514호  
(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  
일부개정 2014. 10. 31 조례 제545호  
일부개정 2015. 10. 2 조례 제601호  
(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  
일부개정 2016. 3. 11 조례 제662호  
일부개정 2018. 10. 5 조례 제821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증평군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 11. 23, 2014. 10. 31, 2016. 3. 11>

제2조(명칭 및 위치) 증평군 사회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. <개정 2014. 10. 31>

제3조(복지관의 사업내용)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14. 10. 31, 2016. 3. 11>

1. 가정복지사업 : 가정문제의 종합상담, 수급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, 생활정보 제공, 직업·부업기능훈련, 무료직업안내소 운영
2. 아동복지사업 : 탁아, 유아보호 및 교육, 어린이기능교실, 불우아동결연, 자모상담 및 교육
3. 청소년복지사업 : 청소년 교양교육, 청소년문제 예방치료, 기능교실운영, 근로청소년 사회교육, 독서실 운영
4. 노인복지사업 : 노인문제상담, 불우노인결연,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지도, 노인학교, 노인목욕서비스, 무료급식소
5. 장애인복지사업 : 장애인상담, 재가장애인서비스 알선, 자립작업장 운영, 후원결연
6. 지역복지사업 : 주민교육, 취미교육, 자원봉사자 활용, 각종 편의시설 제공
7. 그 밖에 지역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

제4조(시설의 이용) 복지관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, 국민기초생활보

##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장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급자를 우선한다. <개정 2016. 3. 11>

제5조(이용의 제한)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0. 31, 2016. 3. 11, 2018. 10. 5>

1. 감염병환자
2.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
3. 그 밖에 군수가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6조(비용의 수납) 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. 다만,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은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3. 11>

제7조(위탁운영) ① 군수는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고,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3. 11>

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서식의 수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0. 31, 2016. 3. 11>

③ 군수는 복지관 수탁운영을 신청한 법인의 사업실적, 재정능력, 사업 수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에 복지관 운영을 위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0. 31, 2016. 3. 11>

④ 복지관 운영을 수탁한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은 자기 책임 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11>

제8조(위탁기간)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0. 31, 2016. 3. 11, 2018. 10. 5>

[제9조에서 이동 2016. 3. 11]

제9조(운영비 보조) ① 군수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탁자에게 사업비, 인건비,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

2007. 11. 23, 2014. 10. 31〉

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에는 복지관 운영비를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4. 10. 31, 2016. 3. 11〉

[제8조에서 이동 2016. 3. 11]

제10조 삭제 〈2014. 10. 31〉

제11조 삭제 〈2014. 10. 31〉

제12조 삭제 〈2014. 10. 31〉

제13조 삭제 〈2016. 3. 11〉

#### 부칙

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설치운영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·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·운영되는 것으로 본다.

③(위탁계약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계약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까지로 한다.

부칙(2007. 11. 23 조례 제26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3. 12. 26 조례 제514호,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(2014. 10. 31 조례 제545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5. 10. 2 조례 제601호,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6. 3. 11 조례 제662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부칙(2018. 10. 5 조례 제821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2013. 12. 26>

사회복지관 명칭 및 위치(제2조관련)

시 설 명	유 형	소 재 지
계	1	
삼보사회복지관	“다”형	증평군 증평읍 창신로 85

